

기관추천 특별공급 | 사전서류접수 구비서류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3개월~1년간 청약(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			
공동 서류	○		신분증	당첨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지참 필수)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당첨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당첨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당첨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첨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기관 추천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빙서류	당첨자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증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당첨자	•건본주택 비치(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당첨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본인 확인
	○		대리인 도장	대리인	•서명가능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해당자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자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자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3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및 주소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서류접수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52조 제4항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